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가단511496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하지훈

변론 종결2020. 7. 3.

판결 선고2020. 7. 1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21,370원 및 그중 36,426,970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5. 29.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58,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2018. 9. 21.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31. 접수 제2102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21,370원 및 그중 36,426,970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8. 2.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신용보증한도를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수입신용보증 약정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최고액 58,5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보증채무이행 금액 등에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고(제8조 제2항), 채권의 집행보전 등을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제8조 제3항).

(2) 피고 회사는 2018. 2. 1. 원고로부터 신용보증한도 45,000,000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2. 2. 중소기업은행에서 무역어음대출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회사는 대출금 만기일인 2019. 2. 1. 이전인 2018. 12. 29. 대출금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는 2019. 3. 13.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36,000,000원, 이자 426,97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9. 3. 14. 채권보전비용(가처분 관련) 694,400원을 지출하였다.

(5)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연 10%이다.

나. 처분행위

(1) 피고 B는 2018. 9. 21.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매매계약서 상으로 매매대금은 2억 9,000만 원, 계약금은 1,500만 원, 잔금은 피고가 2011. 2. 15.자 주식회사 D에 대한 근저당채무 1억 3,800만 원(채권최고액 165,6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억 3,700만 원이다.

다. 피고 B의 채무초과

(1) 피고 B는 이 사건 2019. 1. 현재 소유 부동산이 없다.

(2) 반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외에도 ① 2012. 12. 29.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229,984,000원, ② 주식회사 E에 대한 2015. 12. 22.자 140,000,000원, ③ 기술보증기금 본부에 대한 2012. 12. 10.자 453,736,000원 등의 채무가 있다.

【증거】 피고 1, 2: 자백간주

피고 3: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5호증, 사실조회결과

2. 피고 A,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B는 원고에게 수입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돈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투자 목적으로, 추후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서, 선의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오빠인 소외 F이 2018. 10. 31. B에게 잔금으로 추정되는 122,503,000원을 이체하였다(을다 제5, 8호증).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도한 피고의 오빠인 F(G회사)은 피고 회사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종전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1) ② 피고는 F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는 방편으로 F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F 사이의 대여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더군다나 시급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사정이 없는데도, F로 하여금 한도대출까지 받게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2) ③ 계약금 3,000만 원의 교부에 관하여 영수증(을다 제7호증) 외에 금융자료가 없고, 3) 잔금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D에 대한 근저당채무의 인수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거래태양이 통상적인 매매와는 다소 다른 점, ④ B가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월세 임대차 형식으로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데다가(을다 제6호증),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서 작성 및 일부 송금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게 구상원리금 37,121,370원 및 그중 구상원금 36,426,970원에 대하여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2018. 9. 21.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로 하여금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다.

판사강영훈

별지

지점"(을다 제8, 12호증)은 F의 주거래 은행 영업점으로 추정되고, F이 2018. 11. 12.자 피고 회사에게 34,000,000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을다 제13호증 참조).

2) 2018. 10. 31. 매매대금 송금 직전 잔고는 6,407,530원이다(을다 제13호증 참조).

3) 매매 계약금과 임대차 보증금이 모두 3,000만 원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매매 계약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지급으로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